『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안내

(Ver 23.20)

구 분	주 요 내 용
근거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근거	• 동법 시행령 제3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 • 동법 시행령 별표 6(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응시 자격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 및 제91조에 따른 고등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1.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 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한다) 2. 유체역학
3.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 6. 건축공학 9. 기계공학
4.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7. 전기·전자공학 10. 화재유동학(열역학, 열전달을 포함한다)
5. 방화 및 방폭공학 8. 가스안전 11. 화재조사론

제3조(소방안전 관련 학과)

1.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2.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3.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4.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6. 학군, 전공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한다)

제4조(소방안전관리학과)

1. 소방안전관리과(소방안전과를 포함한다)
2. 소방시스템학과 3. 소방학과
4. 소방환경관리과(소방환경안전학과, 소방환경방재학과, 소방환경학과를 포함한다)
5. 소방공학과 6. 소방행정학과 7. 소방방재학과 8.소방기계·전기·설비과
9. 학군, 전공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한다)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아.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참고 사항** -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험 정보	시험명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일정 및 장소	사이트 시험일정 참고 (안전원사이트 내 소방안전교육>시험접수>**1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일정**)

시험 정보

시험과목

구분	내용
1과목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소방관계법령
	건축관계법령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종합방재실 운영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구조
2과목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점검·실습·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및 실습·평가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4

시험방법 및 시간

시험 방법	배 점	문항수	시간
객관식(선택형,4지 1선택)	1문제 4점	50문항 (과목별 25문항)	1시간(60분)

합격자 결정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합격자에 한하여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시험 접수

접수방법

구 분	시도지부 방문접수 (근무시간 : 9:00 ~ 18:00)	안전원 사이트 접수 (www.kfsi.or.kr)
접수시 관련 서류	• 응시수수료 (현금,카드 등) • 사진 1매 • 응시자격별 증빙서류(해당자 한함)	• 응시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증빙이 불필요한 경우	가 능	가 능
증빙이 필요한 경우 (최초 학력,경력,학경력, 관련자격증의 경우)	가 능	가 능 단, 사전심사 필요 (5~7일 소요)

※ 안전원 사이트 접수 시(마감된 시험일정의 경우 접수 불가)

· 강습교육 수료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급수의 자격시험에 응시이력이 있을 경우
→ '시험일정'에서 접수가능

· 경력·학력·자격증 등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에 한함)
→ 홈페이지 내의 '응시자격 심사 신청'에서 해당 응시자격 신청(증빙자료 첨부)
단, 5~7일 소요되며, 심사완료 후 승인 시 '시험일정'에서 접수 가능

<table>
<tr><td rowspan="4">시험
접수</td><td></td><td>[접수시 주의사항]
1. 지정된 일시 및 장소 외에는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접수된 응시원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시험일정 변경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시험 전 근무일 근무시간까지 가능하며 시험당일 이후에는 일정변경 및 환불신청이 불가합니다.(결시자 포함)
4.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td></tr>
<tr><td>수수료</td><td>12,000 원
※ 계산서는 현금(무통장입금 포함)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td></tr>
<tr><td>일정변경</td><td>해당시험 전일 근무시간까지 일정변경 가능</td></tr>
<tr><td>제출서류</td><td>붙임 참조</td></tr>
<tr><td>환불 규정</td><td><table><tr><th>환불 기준</th><th>금 액</th></tr><tr><td>응시 수수료를 과오납 한 경우</td><td>과오납 금액</td></tr><tr><td>시험시행 전일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td><td>전 액</td></tr><tr><td>시험시행일 부터</td><td>환불불가</td></tr></table>※ 수험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td></tr>
<tr><td colspan="2">응시표 교부</td><td>시험응시표는 시험 당일까지 응시자가 인터넷으로 출력 가능합니다.</td></tr>
<tr><td colspan="2">시험 응시자

유의 사항</td><td>1. 응시자는 응시표에서 정한 입실 시간(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 사진(미제출자에 한함)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의 범위 : 공무원증,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및 학생증(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에 한함)에 한함
3. 시험 OMR 답안카드 작성은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4. 답안카드에 시험교시, 응시번호, 성명 등을 기재·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작성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시험시간 중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시험실내에는 어떠한 통신장비(휴대전화기, 무선호출기, PDA 등) 및 MP3, 녹음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휴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반납하지 않거나 응시표 등에 문제를 옮겨 적어 가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8.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9.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30분전부터 답안 제출 후 중도 퇴실할 수 있습니다.
10. 시험장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야 합니다.
11. 응시자는 시험시행 공고문, 응시표,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을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td></tr>
</table>

인터넷 시험접수 및 결제방법 안내

1. 안전원 사이트 로그인
2. 안전원 사이트 “소방안전교육-시험신청” ⇨ “시험일정” 클릭 ⇨ 응시하고자하는 지부 시험날짜 클릭 ⇨ 시험신청자 정보입력 ⇨ 신용카드 결제 또는 LG데이콤 무통장 계좌할당 및 입금 ⇨ 시험신청 완료

지부별 연락처

• 근무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 지부별 연락처

지부(지역)	연락처	지부(지역)	연락처
서울지부(서울 영등포)	02-850-1378	**서울동부지부**(서울 신설동)	02-850-1392
부산지부(부산 금정구)	051-553-8423	**대구경북지부**(대구 중구)	053-431-2393
인천지부(인천 서구)	032-569-1971	**울산지부**(울산 남구)	052-256-9011
경기지부(수원 팔달구)	031-257-0131	**경기북부지부**(파주)	031-945-3118
대전충남지부(대전 대덕구)	042-638-4119	**경남지부**(창원 의창구)	055-237-2071
충북지부(청주 서원구)	043-237-3119	**광주전남지부**(광주 광산구)	062-942-6679
강원지부(횡성군)	033-345-2119	**전북지부**(전북 완주군)	063-212-8315
제주지부(제주시)	064-758-8047		

첨부 시험접수 관련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

① 시험응시원서 1부
② 사진(가로3.5cm×세로4.5cm) 1매
③ 시험 응시자격 증빙서류 각 1부(“유형별 제출서류” 참고)
※ ③은 학경력등 시험접수자 중 처음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함

□ 유형별 제출서류

[유형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실무경력(선임경력)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1. 선임 및 해임 사실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①~③제출)

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② 실무경력 증빙서류(㉠ ~ ㉢중 택일)
㉠ 선임 및 해임일자가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 1부
㉡ 소방관서 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인 경우 소방안전(방화)관리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대상물 등급은 별도 증빙 필요)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이력확인서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증빙서류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2. 선임 사실은 확인되나 경력기간 증빙이 필요한 경우(①~④제출)

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② 선임사실 증빙서류(㉠ ~ ㉢중 택일)
㉠ 선임일자가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 1부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선임증으로 대체 가능
㉡ 소방관서 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선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인 경우 소방안전(방화)관리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대상물 등급은 별도 증빙 필요)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이력확인서
③ 실무경력 증빙서류(㉠, ㉡중 택일)
㉠ 선임경력(재직)확인서**[별지 2호] 서식** 및 공적증빙서류* 각 1부
* 4대 보험 가입증명서(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택 1)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확인서(안전원 전산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실무교육 이수내역에 따라 실무경력 기간 산정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증빙서류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3. 선임여부 및 경력기간의 증빙이 모두 필요한 경우(①~③제출)

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② 실무경력 증빙서류(㉠, ㉡ 모두 제출)
㉠ 선임경력(재직)확인서**[별지 2호] 서식** 및 공적증빙서류* 각 1부
* 4대 보험 가입증명서(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택 1)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확인서(안전원 전산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실무교육 이수내역에 따라 실무경력 기간 산정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증빙서류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유형2] 학력 확인 또는 소방안전관련 교과목 이수확인이 필요한 경우

1. 졸업(학위)증명서에 기재된 학과명이 관련고시의 학과명과 동일한 경우(①~②제출)

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② 졸업(또는 학위) 증명서 1부

2. 졸업(학위)증명서에 기재된 학과명이 관련고시의 학과명과 다른 경우(①~③제출)

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② 졸업(또는 학위) 증명서 1부
③ 동일학과 인정확인서**[별지 3호] 서식** 및 동일학과 인정 검토 의견서**[별지 4호] 서식** 각 1부
※ 성적증명서(이수과목 확인용)를 동일학과 인정 검토의견서의 첨부 자료로 제출

3.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이수확인이 필요한 경우(①~③제출)

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② 졸업(또는 학위) 증명서 1부
③ 이수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성정즉명서 등) 1부

[유형3] 국가기술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1. 국가기술자격증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①~②제출)

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②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수첩형 또는 상장형) 1부
※ 상장형일 경우 90일 이내 발급한 자격증(진위여부 확인)

시험응시자 증빙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1.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 관공서 팩스민원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2. 증빙서류 중 안전원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간주함.
   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증빙서류, 실무교육 이수확인서 등
3. 경력사항에 대해서 유선 또는 문서 등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이 확인 시 시험응시가 불가함
4. 2개 이상의 대상물에서 근무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력(재직)확인서는 대상물별 대표자로부터 각각 발급 받아야 함

[별지서식1]

수험번호	-

☐ 특급
☐ 1급
☐ 2급
☐ 3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수험자 서약사항

본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응시함에 있어 응시자격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며 이 서약서에 첨부된 증빙서류 및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감수할 것을 명심하고 신청합니다.

☐ 수험자 기재사항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	휴대폰 :	연락처 ☎ :	
이 메 일			
제출서류 내 역	☐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 ☐ 실무경력(경력기간) 확인 증빙서류 ☐ 공적증빙서류 * 4대 보험가입증명서 등(납입사실 명시)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이수확인 증빙서류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확인 증빙서류 ☐ 학력인정 증빙서류 ☐ 기타 증빙서류 (_____)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안전원장 귀하

[별지서식2]

☐ 특급
☐ 1급
☐ 2급
☐ 3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경력(재직) 확인서

성명	(한글)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연락처	- 휴 대 폰 : - 일반전화 :

증명사항	소속 및 직위	선임기간	경력기간	담당업무내용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상기 경력기간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 등)에 따라 선임된 경력은 제외함			

용도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시험응시 제출용

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본 확인서가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에 필요한 경력입증용임을 인지함은 물론 이 증명이 허위, 위조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형사처벌(공·사문서위조, 변조 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상물명 또는 상호 :

소재지 : (연락처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대표자 생년월일) :

대 표 자 : ㊞

발 급 자	
소속	
직위	
성명	㊞

한국소방안전원장 귀하

[별지서식3]

동일학과 인정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학교명		학과명	학과	학 번	
졸업일자	년 월 일		학위번호		

※ 상기 응시자가 졸업한 학과와 아래 관련고시의 학과명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학과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학과 인정범위는 소방청 고시
「소방관련 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등에 관한 기준」에 의함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안전과, 소방시스템학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학과, 소방환경안전학과, 소방환경방재학과, 소방환경학과, 소방공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방재학과 및 소방기계·전기·설비과를 포함한다)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7. 학군, 전공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한다)

상기자가 졸업한 (과)는 동일학과 인정범위의 소방관련학과 중
(과)와 동일한 학과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원) 학교장 또는 총장(교무처장) (직인)

붙임 : 동일학과 인정 검토의견서 1부.

한국소방안전원장 귀하

[별지서식4]

동일학과 인정 검토의견서

□ 학교명 :

□ 성 명 :

□ 학위취득일자 :

□ 응시자의 졸업 학과명 :

□ 동일학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과명 :

가. 응시자 졸업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교과목 등으로 설명)	나. 동일학과로 인정받고자하는 해당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교과목 등으로 설명)	동일학과 인정에 대한 의견
		※ "가" 및 "나"항과 첨부 성적증명서 이수과목을 참조하여 기술
※ 기타 의견		

응시자 졸업학과 학과장(교장) 확인 : 직인

첨부 : 이수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수과목 확인용, 성적증명서 등) 1부.